

제주지방법원 2024. 6. 3 선고 2023나131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4. 6. 3 선고 2023나1310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소87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변론종결 2024. 4. 15.

판결선고 2024. 6. 3.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소8750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22. 4. 6. 11:35경 제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2022. 4. 8.부터 2022. 4. 16.까지 H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F에게 치료비 279,180원, 향후치료비 562,000원, 위자료 15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등 합계 1,079,1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고는 G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15 : 피고 차량 85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심의위원회 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9. 5. 이 사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61,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차량은 통상 예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 차량의 급격한 진로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 161,870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F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②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2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원고 차량에 근접

2) 하여 우측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기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타이어의 조향방향이 전면이고, 충돌 흔적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스치듯이 부딪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비교적 서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따라서 원고 차량이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5 : 85로 봄이 타당하다.

3)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 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차량 보험자인 원고는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F이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책임보험금 범위 내의 진료비 해당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가 F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 279,180원, 향후치료비 562,000원, 위자료 15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등 합계 1,079,1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보험금 중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562,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 향후치료비까지 예상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향후치료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피고가 F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위 562,000원은 F이 입은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517,180원(= 1,079,180원 - 향후치료비 562,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고, 피고가 F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F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 즉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77,577원(= 517,180원 × 피고 차량 과실비율 15%)이다.

(2) F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규정의 상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상해등급 14급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500,000원인바, 피고가 F의 치료비로 지급한 279,180원은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내이므로, 책임보험금 범위 내의 진료비 해당액은 279,180원이다.

다)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은 위 77,577원과 위 279,180원 중 다액인 279,180원이 된다. 그런데 위 279,18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한 161,87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61,870원을 부담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선옥, 판사 류지원, 판사 정혜미